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2212
----------	------

발의연월일 : 2022. 9. 6.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의원, 도병두 의원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구 행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체 의원이 평소 관심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42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설치),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 활동기간,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

④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⑦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 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추천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추천자 : 금천구의회 의장

추천일시 : 2022. 9. 6.(화)

추천위원 명단(9명)

위원회명	직 위	성 명	비 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 원	고영찬	
	위 원	이인식	
	위 원	도병두	
	위 원	정순기	
	위 원	장규권	
	위 원	정재동	
	위 원	엄샛별	
	위 원	윤영희	
	위 원	고성미	